

#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06,647,297	60,199,419
일반회계	1,680,648,053	50,419,442
특별회계	325,999,244	9,779,977
공기업특별회계	231,240,866	6,937,2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	115,044,498	3,451,335
하수도사업	116,196,368	3,485,891
기타특별회계	94,758,378	2,842,751
하수도특별회계	386,649	11,599
교통사업 특별회계	25,360,481	760,814
장사시설 특별회계	366,388	10,99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83,040	53,49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034,914	91,04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968,600	179,058
기반시설 특별회계	454,483	13,634
수질개선 특별회계	57,403,823	1,722,11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437,19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8,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